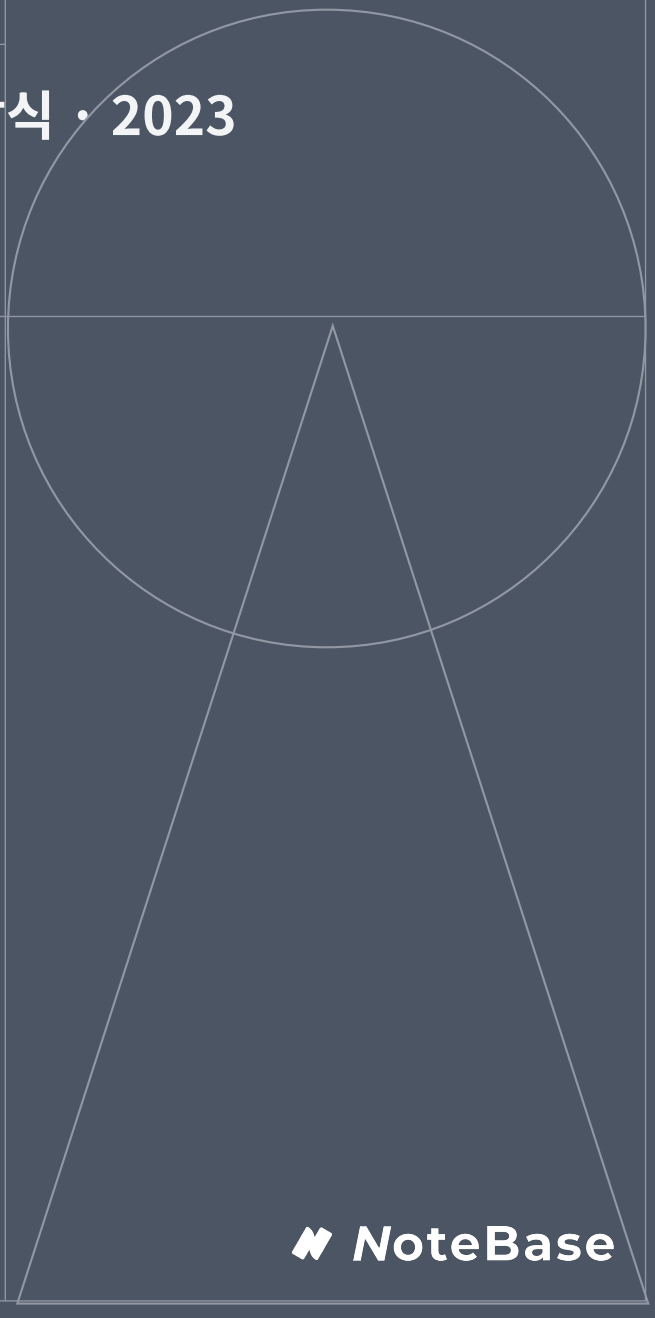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금융상식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금융상식 · 2023

공무원/계리직/9급 · 금융상식 · 2023

1. 다음 (가)~(다)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가) 잔액이 1만 원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없을 때 거래중지계좌에 편입할 수 있으며,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은 매년 (　)회 한다.
>
> (나) 저축성예금의 예금자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월부금을 납입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예치한 자는 예입액의 (　)퍼센트의 범위에서 만기 전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다)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　)년간 예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예금의 지급, 이자의 기입, 인감 변경, 예금통장(예금증서를 포함한다)의 재발급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의 지급청구나 그 밖에 예금의 처분에 필요한 신청을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가)	(나)	(다)
①	1	80	5
②	2	90	5
③	1	80	10
④	2	90	10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예금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횟수, 저축성예금의 만기 전 지급 한도, 예금지급청구권 소멸을 위한 최고 요건의 기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규정의 수치인 2회, 90퍼센트, 10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NoteBase

용어 풀이

거래중지계좌 = 일정 잔액 이하의 요구불예금계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거래가 없을 때 편입할 수 있는 계좌이다.
만기 전 지급 = 일정 기간 이상 월부금을 납입하거나 예치한 저축성예금자가 예입액의 일정 범위에서 만기 전에 일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다.
최고(催告) = 권리자에게 일정한 청구나 신청을 하도록 알리고 요구하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현행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거래중지계좌 편입은 매년 2회 한다. 같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저축성예금자는 예입액의 90퍼센트 범위에서 만기 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체신관서는 예금자가 10년간 열거된 거래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청구 등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빈칸은 차례대로 2, 90, 10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거래중지계좌 편입 횟수, 만기 전 지급 한도, 최고 요건의 기간을 모두 잘못 제시하였다.
- 틀린 표현: 1회, 80퍼센트, 5년
- 올바른 표현: 매년 2회, 예입액의 90퍼센트 범위, 10년이다.

② X
- 매년 2회와 90퍼센트는 맞지만, 최고 요건의 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 틀린 표현: 5년
- 올바른 표현: 10년이다.

③ X
- 10년은 맞지만, 거래중지계좌 편입은 매년 1회가 아니라 2회이고 만기 전 지급 한도는 80퍼센트가 아니라 90퍼센트이다.
- 틀린 표현: 1회, 80퍼센트
- 올바른 표현: 매년 2회, 예입액의 90퍼센트 범위이다.

④ O
- 거래중지계좌 편입은 매년 2회이고, 만기 전 지급은 예입액의 90퍼센트 범위이며, 최고 요건의 무거래 기간은 10년이므로 세 빈칸이 모두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거래중지계좌 편입 요건의 '1년 이상 거래 없음'을 편입 횟수인 '연 1회'로 잘못 연결하기 쉽다. 또한 만기 전 지급 한도 90퍼센트와 최고 요건의 기간 10년 중 하나만 맞는 ②·③을 고르지 않도록 세 수치를 모두 대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거래중지계좌는 '잔액 1만원 미만·1년 이상 무거래'라는 편입 요건과 '매년 2회'라는 편입 횟수를 분리하고, 만기 전 지급은 90퍼센트, 소멸 최고를 위한 무거래 기간은 10년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거래중지 편입 2회, 만기 전 지급 90퍼센트, 소멸 최고 10년으로 기억한다.

NoteBase

2. 예금의 입금과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회사는 예금청구서의 금액·비밀번호·청구일자 등이 정정된 경우, 반드시 정정인을 받거나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입금조작을 잘못하여 착오계좌에 입금한 경우, 금융회사는 착오계좌 예금주의 동의와 관계없이 취소 처리하고 정당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통장 등을 발행한 경우, 실제로 입금한 금액에 한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므로 예금주의 계좌에서 초과입금액을 인출하면 된다.

④ 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경우,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요청할 수 있고, 반환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환거절일로부터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예금의 입금·지급 과정에서 생기는 서류 정정, 전산 조작 오류, 과다입금 및 착오송금의 처리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금융회사 직원의 조작 오류와 송금인의 착오송금을 구별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신청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용어 풀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보낸 돈을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금융회사 직원이 단순히 전산 입금조작을 잘못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잘못된 기장을 취소하고 정당계좌에 바로잡아 입금할 수 있다. 반면 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에 관한 규정상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반환거절일부터 1년 이내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예금청구서는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금액·비밀번호·청구일자와 같은 중요 사항을 고쳤다면 정정인을 받거나 새로운 전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O
직원이 입금조작을 잘못하여 엉뚱한 계좌에 기장한 것은 송금인의 착오송금이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의 전산 처리 오류이다. 금융회사는 착오계좌 예금주의 동의 없이 잘못된 기장을 취소하고 정당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③ O
금융회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통장 등에 기장했더라도 예금계약은 실제 입금액 범위에서만 성립한다. 초과 기장된 부분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는 그 초과입금액을 계좌에서 바로잡아 인출할 수 있다.

④ X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이 거절되거나 연락 불가 등으로 반환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신청기한의 기산점은 반환거절일이 아니라 착오송금 발생일이다.
틀린 표현: 반환거절일로부터 1년 이내
올바른 표현: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오답 포인트

④의 '반환거절일'을 신청기한의 기산점으로 보기 쉽다. 금융회사를 통한 선행 반환요청은 지원 신청의 절차적 요건이지만, 1년의 신청기간은 그 거절일이 아니라 착오송금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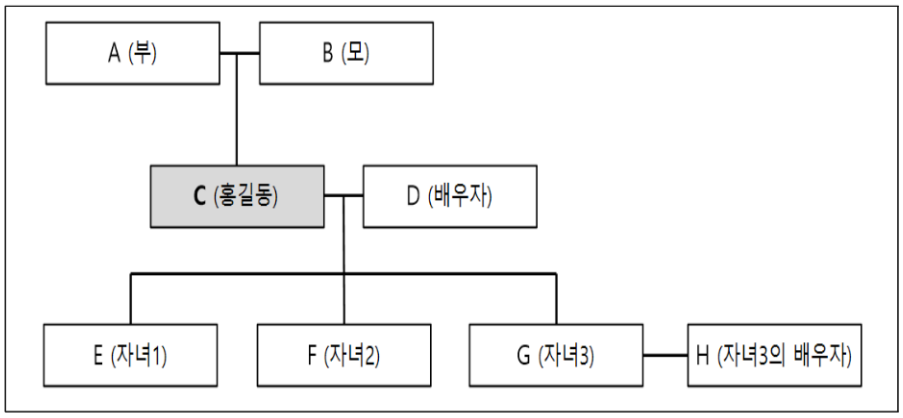
오류의 주체와 기간의 기산점을 나누어 판단한다. 직원의 전산 조작 오류이면 금융회사의 직권 정정 문제이고, 송금인의 착오이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 후 예금보험공사 지원 문제이다. 반환지원 신청기간은 착오송금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요청, 미반환 시 공사 지원, 기한은 송금 발생일부터 1년이다.

NoteBase

3. 다음은 상속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C의 사망(그 외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으로 인한 상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C의 사망 당시 G가 상속결격자였다면 상속인은 총 3명이다.

② C가 정기적금 적립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E는 F와 G의 동의만으로도 C의 적금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③ C가 사망 당시 유언으로 전 재산 9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여 공동상속인 모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면 E의 유류분 금액은 1억 원이다.

④ 합유설에 의하면 C의 사망 당시 F가 행방불명인 경우 F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 요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가계도에 상속순위, 배우자의 가산상속분, 대습상속, 유류분 및 공동상속 예금의 처리 법리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정상속인 전원을 먼저 확정한 뒤 각 선지가 전원의 관여를 요구하는지와 개인별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상속결격 = 법이 정한 중대한 사유로 상속인이 될 자격을 잃는 것이다.
대습상속 =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일정한 가족이 대신 상속하는 것이다.
유류분 = 유언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이다.
합유설 = 공동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관리·처분해야 하는 공동귀속 재산으로 보는 견해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C의 직계비속 E·F·G가 제1순위이고 배우자 D는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A·B는 선순위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며, 자녀의 배우자 H도 원칙적으로 C의 직접 상속인은 아니다. 배우자는 자녀 1명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므로 D:E:F:G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5:1:1:1이다. 따라서 D는 1/3, 각 자녀는 2/9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이 문항의 출제 당시 적용 법리에 따르면 자녀 G가 상속결격자가 되면 G의 배우자 H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D, E, F, H의 4명이다.
- 틀린 표현: 상속인은 총 3명이다.
- 올바른 표현: 상속인은 총 4명이다.

② X
- 정기적금 계약을 E가 단독으로 승계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F와 G뿐 아니라 C의 배우자이자 공동상속인인 D의 동의도 필요하다.
- 틀린 표현: F와 G의 동의만으로 E가 적금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D, F, G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E가 적금계약을 단독 승계할 수 있다.

③ O
- E의 법정상속분은 2/9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1/9이다. 전 재산 9억원을 제3자에게 유증하여 E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에서 E의 유류분액은 9억원 × 1/9 = 1억원이다.

④ X
- 합유설에서는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행사해야 한다. F가 행방불명이라고 하여 F의 몫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각 공동상속인의 개별 요청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
- 틀린 표현: F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공동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합유설에 따르면 행방불명인 F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관여하지 않은 채 일부 상속분만 개별적으로 분할 지급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G만 제외하고 끝내기 쉽지만 출제 당시 법리에 따른 H의 대습상속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②에서는 자녀만 보고 배우자 D를 빠뜨리기 쉽다. ③에서는 배우자 가산분 때문에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이 1/4이 아니라 2/9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④에서는 합유설과 각 상속인이 자기 몫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분할채권설을 혼동하면 안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계도형 상속 문제는 먼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순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정한다. 그다음 배우자 가산분을 반영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유류분은 해당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다. 공동상속 예금의 처리는 계약 지위의 승계인지, 가분채권의 개별 귀속인지, 합유설상 공동행사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면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이고,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NoteBase

4.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또는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므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② 전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 교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행되는 주가지수연계채권(원금보장형)은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일반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파생상품(주로 옵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④ 첨가소화채권은 주택 또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채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채권의 일반적 특성과 전환사채·교환사채·주가지수연계채권·첨가소화채권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채권: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보다 원리금 상환 순위가 앞서고 가격 변동성이 작아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
전환사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교환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한 특정 주식 등 교환대상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교환 대상은 발행회사 자신의 주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주가지수연계채권(원금보장형): 투자금의 대부분을 채권 등에 운용해 원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일부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주가지수 연계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첨가소화채권: 주택·자동차 구입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특정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공공채권으로, 공공사업 재원 조달에 활용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 등이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은 주식에 비해 원리금 상환 구조와 변제 순위가 정해져 있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교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이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지만,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특정 주식 등 미리 정한 교환대상 유가증권과 교환된다. 따라서 교환대상을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한정할 수 없다.
③ O —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계채권은 투자금 대부분을 일반 채권 등에 투자해 원금 상환 재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주로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해 지수 연계 수익을 추구한다.
④ O — 첨가소화채권은 주택·자동차 구입이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 일정한 행위에 부수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전환'과 '교환'을 모두 주식 취득으로 묶어 표현해 혼동을 유도한다. 핵심은 주식 취득 여부가 아니라 대상의 소유 관계이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바뀌고,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미리 정한 유가증권과 맞바뀐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취득 대상부터 확인한다.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면 전환사채이고, '발행회사가 보유한 특정 유가증권과 교환'이면 교환사채이다. 원금보장형 연계채권은 '대부분 채권, 일부 파생상품', 첨가소화채권은 '특정 행위에 따른 의무 매입'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전환은 발행회사 주식, 교환은 발행회사가 보유한 지정 유가증권이다. 원금보장형은 대부분 채권·일부 옵션, 첨가소화채권은 의무 매입 공공채권이다.

NoteBase

5. <보기>에서 CD/ATM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우체국 스마트 ATM"은 기존 ATM 서비스뿐만 아니라 계좌개설, 체크카드 및 보안매체 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이 가능하다.

ㄴ. CD/ATM 계좌이체는 최근 1년간 영업점 창구를 통한 현금 입·출금 실적이 없는 고객에 한하여 1일 및 1회 이체한도를 각각 70만 원으로 축소하고 있다.

ㄷ. CD/ATM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등이 있어야 하지만 최근 기술 발달로 휴대폰, 바코드, 생체인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매체가 없어도 CD/ATM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ㄹ.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수취계좌 기준 1회 100만 원 이상 이체금액에 대해 CD/ATM에서 인출 시 입금된 시점부터 10분 후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CD/ATM의 확장 서비스, 장기 미사용 계좌의 한도 축소 기준, 무매체 이용 방식, 지연인출제도의 적용 금액과 시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CD/ATM 서비스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입금·출금·이체·조회 등을 처리하는 금융 서비스이다.
ㄱ은 옳다. 우체국 스마트 ATM은 일반 입금·출금·이체·조회뿐 아니라 본인 확인을 거쳐 계좌 개설, 체크카드·보안매체 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ㄴ은 옳지 않다. 70만 원으로 축소되는 이체한도의 판단 기준은 영업점 창구의 현금 입·출금 실적이 아니라 최근 1년 이내 자동화기기에서의 이체 실적이다.
ㄷ은 옳다. 카드 외에도 휴대폰과 앱 인증, 바코드·인증번호, 생체인식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물 카드나 통장 같은 물리적 매체 없이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있다. 다만 본인 확인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ㄹ은 옳지 않다. 수취계좌에 1회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되면 해당 금액 범위에서 입금 시점부터 30분간 CD/ATM 인출·이체가 지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ㄷ은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다.
② X — ㄴ과 ㄹ은 모두 옳지 않다. ㄴ의 '영업점 창구를 통한 현금 입·출금 실적'은 '최근 1년 이내 자동화기기 이체 실적'으로, ㄹ의 '10분'은 '30분'으로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이다.
③ X — ㄱ과 ㄷ은 옳지만 ㄴ이 옳지 않다. ㄴ은 최근 1년 이내 자동화기기에서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의 1회·1일 이체한도가 각각 70만 원으로 조정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ㄴ을 제외한 ㄱ, ㄷ이 올바른 조합이다.
④ X —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이 옳지 않다. ㄹ의 지연시간은 10분이 아니라 입금 시점부터 30분이다. 따라서 ㄹ을 제외한 ㄱ, ㄷ이 올바른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ㄴ은 '7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맞게 제시하고 적용 기준만 영업점 창구 실적으로 바꾸었고, ㄹ은 '1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금액은 맞게 제시하면서 지연시간만 10분으로 바꾸었다. 숫자 하나가 맞다는 이유로 문장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쉬운 구성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도 축소 문장은 금액보다 먼저 어떤 거래 실적을 어느 채널에서 보았는지 확인한다. 지연인출 문장은 '수취계좌에 1회 100만 원 이상 입금'과 '입금 시점부터 30분간 ATM 인출·이체 지연'을 한 묶음으로 판단한다. 무매체 거래는 실물 카드·통장이 없다는 뜻이며 본인 인증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암기 포인트

ATM 이체 미사용 1년은 70만 원, 100만 원 이상 입금은 30분 지연, 무매체는 카드 없이 인증으로 이용한다.

NoteBase

6. 우체국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체국 생활든든통장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에 한해 입금이 가능한 수시입출식 예금이다.

② 우체국 가치모아적금은 예금주에게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목돈 모으기가 가능한 적립식 예금이다.

③ 이웃사랑정기예금은 종이통장 미발행, 친환경 활동 및 기부참여 시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ESG 연계 정기예금이다.

④ 우체국 편리한e정기예금은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 재예치,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로 편리한 목돈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전용 정기예금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예금상품의 명칭과 핵심 가입 목적·부가서비스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희망지킴이통장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식 예금이다.
매일모아 e적금은 매일 자동이체와 매주 알림저축으로 소액 목돈 마련을 돕는 디지털 전용 적립식 예금이다.
초록별사랑 정기예금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친환경 활동과 기부 참여에 우대혜택을 주는 ESG 연계 정기예금이다.
편리한e정기예금은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 재예치, 만기 자동해지 기능으로 목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우체국 생활든든통장'이다.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수시입출식 압류방지 전용 예금은 '우체국 희망지킴이통장'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우체국 가치모아적금'이다. 매주 알림저축 서비스를 통해 소액을 편리하게 모으는 적립식 예금은 '우체국 매일모아 e적금'이다. 가치모아적금은 여행자금이나 모임회비 등 공동의 목돈을 여럿이 함께 모을수록 우대혜택이 커지는 상품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이웃사랑정기예금'이다. 종이통장 미발행, 친환경 활동 및 기부 참여에 따른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ESG 연계 정기예금은 '초록별사랑 정기예금'이다. 이웃사랑정기예금은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④ O
우체국 편리한e정기예금은 보너스 입금, 비상금 출금, 자동 재예치, 만기 자동해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번 가입한 목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이다.

오답 포인트

①~③은 서비스 설명 자체는 맞지만 상품명을 바꾸어 붙인 선지이다. 특히 '가치모아'와 '매일모아', '이웃사랑'과 '초록별사랑'처럼 이름이 비슷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상품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명의 핵심어와 대표 기능을 한 쌍으로 대조한다. '희망지킴이-산재 보험급여 보호', '매일모아-매일 자동이체·매주 알림저축', '초록별사랑-친환경·기부', '편리한e-보너스 입금·비상금 출금·자동 재예치·만기 자동해지'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희망은 급여를 지키고, 매일모아는 알림으로 모으며, 초록별은 환경을 살리고, 편리한e는 목돈을 편리하게 운용한다.

NoteBase

7.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용 체크카드의 현금 입출금 기능은 법인, 임의단체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② 개인 체크카드 발급대상은 우체국 거치식예금 통장을 보유한 만 12세 이상의 개인이다.

③ 위탁업체를 통하여 발급받은 경우, 고객이 카드 수령 후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우체국 체크카드는 일반적인 직불 전자지급 수단에 의한 지불결제, 현금카드 기능 외에도 상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 추가 및 발급 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체크카드의 발급 대상, 현금카드 기능, 후발급 카드의 사용등록 방법, 상품별 부가 기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체국 체크카드는 요구불예금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대금을 즉시 결제하는 전자지급수단이다. 개인용과 법인용의 발급 조건 및 현금카드 기능이 다르고, 후발급 카드는 수령한 뒤 정해진 비대면 또는 대면 경로로 사용등록할 수 있다. 상품별로 복지·교통·점자·해외 이용 등 부가 기능과 발급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법인용 체크카드의 현금 입출금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이나 임의단체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다. 틀린 표현인 '법인, 임의단체에 한하여'를 '개인사업자에 한하여'로 고쳐야 한다.

② X
개인 체크카드는 거치식예금이 아니라 우체국 요구불예금 계좌를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일반 체크카드는 만 7세 이상이 발급 대상이므로, '거치식예금 통장을 보유한 만 12세 이상'을 '요구불예금 계좌를 보유한 만 7세 이상'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위탁업체를 통한 후발급 카드는 수령 후 사용등록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 본인이 우체국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고객센터 등 정해진 경로에서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야만'을 '우체국 창구 또는 정해진 비대면 경로를 통하여'로 고쳐야 한다.

④ O
우체국 체크카드는 결제와 현금카드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상품별 특성에 따라 복지·교통·점자·해외 이용 등의 기능과 일반·하이브리드 등 발급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법인용 카드라는 말 때문에 법인과 임의단체도 현금 입출금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한다. ②는 '거치식예금'과 '요구불예금'을 바꾸었고, ③은 사용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등록 장소가 우체국 창구뿐이라는 주장으로 과장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급 대상은 연령과 결제계좌의 예금 종류를 함께 확인하고, 후발급 카드는 '사용등록 필요 여부'와 '등록 가능한 경로'를 나누어 판단한다. 상품 기능을 묻는 선지는 공통 기본 기능과 상품별 선택 기능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개인 체크카드는 요구불예금, 법인용 현금 기능은 개인사업자, 후발급은 수령 후 사용등록, 부가 기능은 상품별 선택이다.

NoteBase

8. <보기>에서 우체국 외국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외화배달 서비스 이용 시 외화 수령일은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에서 10 영업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ㄴ. 머니그램(MoneyGram)은 송금 후 약 10분 뒤에 송금번호(REF.NO)만으로 수취가 가능한 특급해외송금 서비스이다.

ㄷ. 외화환전 예약서비스는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에서 신청 후 모든 우체국 또는 제휴은행 일부 지점에서 현물을 수령할 수 있다.

ㄹ. 우체국은 하나은행과 업무 제휴하여 하나은행 SWIFT 망을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의 외화배달, MoneyGram, 외화환전 예약, SWIFT 해외송금 서비스의 이용 방식과 제휴기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화배달 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10영업일 안에서 수령일을 지정하는 서비스이다.
MoneyGram은 송금 후 약 10분 뒤 송금번호(REF.NO)를 이용해 수취할 수 있는 특급해외송금 서비스이다.
외화환전 예약서비스의 현금 수령처는 모든 우체국이 아니라 지정된 일부 우체국과 제휴은행 영업점이다.
우체국의 SWIFT 해외송금 제휴은행은 하나은행이 아니라 신한은행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다. 외화배달 수령일은 신청일부터 3~10영업일 안에서 지정할 수 있고, MoneyGram은 약 10분 뒤 수취할 수 있는 특급해외송금 서비스이다.
② X — ㄹ의 '하나은행 SWIFT망'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우체국이 신한은행과 제휴하여 전 세계 은행으로 SWIFT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ㄹ이 아니라 ㄱ·ㄴ이다.
③ X — ㄷ의 '모든 우체국'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환전 예약 후 지정된 일부 우체국과 제휴은행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ㄴ·ㄷ이 아니라 ㄱ·ㄴ이다.
④ X — ㄷ과 ㄹ이 모두 틀렸다. ㄷ은 수령처를 모든 우체국으로 확대한 점이 잘못되었고, ㄹ은 SWIFT 제휴은행을 하나은행이라고 한 점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조합은 ㄱ·ㄴ이다.

오답 포인트

환전 예약서비스에서 하나은행 영업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SWIFT 송금 제휴은행과 혼동하기 쉽다. 또한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을 '모든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비스별로 신청 채널, 처리 시간, 수령 장소, 제휴은행을 따로 확인한다. '모든', '만으로' 같은 단정 표현과 환전 수령 제휴은행·SWIFT 송금 제휴은행의 혼동을 우선 점검한다.

암기 포인트

배달은 3~10영업일, MoneyGram은 약 10분, 환전 수령은 지정 지점, SWIFT 송금은 신한은행 제휴이다.

NoteBase

9. <보기>에서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간이다.

ㄴ. 통보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명의인에게 정보제공사실과 통보유예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ㄷ. 과세자료의 제공,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 간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ㄹ.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 통보유예 종료 후 통보기한, 기록·관리 의무의 예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즉시'와 '10일 이내', 기록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통보유예는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바로 알리면 수사·조사나 사람의 안전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명의인에 대한 통보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한다. 다만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한다.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 제공은 법정 기록·관리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통보유예기간이 끝나면 '즉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또한 통보 내용은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이며, 통보유예 사유를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는 아니다.
- 틀린 표현: ㄴ의 '즉시' 및 '통보유예 사유 등을 통보'
- 올바른 표현: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정 사항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② O
- ㄱ은 거래정보 제공 관련 기록을 정보 제공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는 원칙에 맞고, ㄹ은 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제공 사실을 통보한다는 원칙에 맞는다. 따라서 ㄱ, ㄹ의 조합이 옳다.

③ X
- ㄴ은 통보 시점을 '즉시'라고 한 점 등이 틀리고, ㄷ은 기록·관리 의무의 제외 대상을 오히려 기록해야 하는 대상으로 서술하여 틀리다.
- 틀린 표현: ㄴ의 '즉시', ㄷ의 '과세자료의 제공,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 간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올바른 표현: 유예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며,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 제공은 법정 기록·관리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④ X
-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ㄷ, ㄹ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ㄷ의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올바른 표현: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금융회사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 간 업무상 필요한 정보 제공은 법정 기록·관리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ㄱ, ㄹ이다.

오답 포인트

ㄴ의 '즉시'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넘기거나, 통보유예 사유가 기록·관리 항목이라는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할 항목과 혼동하기 쉽다. 또한 ㄷ은 비밀보장의 예외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 제공 내용을 반드시 기록·관리해야 하는지를 뒤섞은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간 문제는 기산점과 기간을 한 쌍으로 확인한다. 기록 보관은 원칙적으로 '제공일-5년', 제공 사실 통보는 '제공일 또는 유예 종료일-10일 이내'로 판단한다. 이어서 과세자료와 금융회사 내부·상호 간 업무상 정보 제공이 기록·관리 의무의 제외 대상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기록은 5년, 통보는 10일 이내, 과세자료·내부 및 상호 간 업무상 제공은 기록 예외이다.

NoteBase

10. 예금자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보호금융상품이며,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은 비보호금융상품이다.

③ 보호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④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는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주택청약상품의 보호 여부, 금융회사별 보호한도, 파산 시 보호한도 초과 예금의 처리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시험 당시 보호한도와 현행 보호한도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구분해야 한다.

용어 풀이

예금자보호 = 부보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법정 한도 안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보금융회사 =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금융회사이다.

핵심 구분

정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지만,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2023년 시험 당시 일반 예금의 보호한도는 동일한 금융회사 안에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이었다.

현재 기준 변화

2025년 9월 1일부터 일반 예금의 보호한도는 동일한 금융회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2023년 당시에는 옳았던 ③의 '5천만원'도 현행 기준에서는 틀리다.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출제하면 ②와 ③이 모두 틀려 단일정답형 문항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정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X
보호 여부를 서로 반대로 설명했다.
틀린 표현: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금융상품이고 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은 비보호금융상품이다.
올바른 표현: 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은 보호금융상품이고,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별도로 관리한다.

③ O
2023년 시험 당시에는 동일한 금융회사 안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이었으므로 옳다. 현행 보호한도는 1억원이므로 현재에는 틀린 선지가 된다.

④ O
예금보험공사의 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은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으로 남는다. 선순위채권을 변제한 뒤 남는 재산이 있으면 다른 일반채권자와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받는다.

오답 포인트

②는 이름이 비슷한 네 가지 주택청약상품의 보호 여부를 정확히 뒤집은 선지이다. ③은 2023년의 5천만원과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현행 1억원을 혼동하게 만드는 시점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보호대상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상품별 보호 여부를 구분한 뒤, 문제의 시험연도에 적용되는 금융회사별 1인당 보호한도를 대입한다.

암기 포인트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보호,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은 정부 관리이다. 보호한도는 2023년 5천만원, 현행 1억원이다.

NoteBase

11. <보기>에서 보험계약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 보 기 >

ㄱ. 보험목적물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로 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
ㄴ. 보험기간은 보험에 의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으로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하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을 승낙함으로써 개시된다.
ㄷ. 보험사고란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ㄹ. 보험료는 보험사고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3번

쟁점

보험계약의 요소인 보험목적물, 보험기간, 보험사고, 보험료의 의미와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점을 구별하여 옳은 설명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보험목적물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보상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보험기간은 보험의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이다. 보험사고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다. 보험료는 보장을 받기 위해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핵심 구분

ㄱ은 보험목적물이 보상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ㄴ은 보험기간을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 한 부분은 옳지만, 보험자의 책임이 보험의 승낙만으로 개시된다고 한 부분이 틀리다. 현행 상법 제656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ㄷ은 보험사고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하고, ㄹ은 보험료의 지급 주체와 상대방을 바르게 설명한다. 따라서 ㄱ, ㄷ, ㄹ의 3개가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보기가 '1개'라는 표현이 틀리다. ㄱ, ㄷ, ㄹ이 옳으므로 올바른 개수는 3개이다.
② X — 옳은 보기가 '2개'라는 표현이 틀리다. ㄴ만 틀리고 나머지 세 보기가 옳으므로 올바른 개수는 3개이다.
③ O — ㄱ, ㄷ, ㄹ이 옳고 ㄴ이 틀리므로 옳은 설명의 총개수는 3개이다.
④ X — 옳은 보기가 '4개'라는 표현이 틀리다. ㄴ의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을 승낙함으로써 개시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되므로 옳은 설명은 3개이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 보험계약의 승낙 시점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시점을 같다고 본 것이 함정이다. 보험기간의 뜻 자체는 맞지만, 책임 개시 시점에 관한 뒤 문장이 틀리므로 ㄴ 전체를 X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 보기 안에 정의와 법적 효과가 함께 있으면 문장을 부분별로 나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틀리면 그 보기 전체를 X로 처리한 뒤 O의 개수를 센다.

암기 포인트

승낙은 계약 성립, 최초 보험료 수령은 보험자 책임 개시의 원칙이다.

NoteBase

12. <보기>에서 우체국보험 언더라이팅(청약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언더라이팅(청약심사)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위험의 선택" 업무로서 위험평가의 체계화된 기법을 말한다.
ㄴ. 보험판매 과정에서 계약선택의 기준이 되는 위험 중 환경적 위험은 피보험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운전여부, 취미활동, 음주 및 흡연여부,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 등이다.
ㄷ.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의 신체적·환경적·도덕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상인수, 조건부인수, 거절 등의 합리적 인수조건을 결정하는 언더라이팅(청약심사)을 하게 된다.
ㄹ. 계약적부조사는 적부조사자가 계약자를 직접 면담하여 계약적부조사서상의 주요 확인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언더라이팅의 의미, 환경적 위험과 도덕적 위험의 구분, 체신관서의 인수 판단, 계약적부조사의 면담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언더라이팅(청약심사)은 보험회사가 청약 대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인수 여부와 인수 조건을 결정하는 체계적인 위험 선택 업무이다.
환경적 위험은 직업·업무 내용, 운전, 취미, 음주·흡연 등 피보험자의 생활환경이나 활동에서 비롯되는 위험이다.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가능성과 관련된 도덕적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이다.
체신관서는 피보험자의 신체적·환경적·도덕적 위험을 종합하여 정상인수, 조건부인수, 거절 등 합리적인 인수조건을 정한다.
계약적부조사는 적부조사자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청약서의 고지 내용과 주요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ㄴ의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환경적 위험에 포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직업·업무 내용, 운전, 취미, 음주·흡연 등은 환경적 위험의 판단 요소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도덕적 위험의 판단 요소이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ㄷ이다.
② O — ㄱ은 언더라이팅을 위험평가의 체계적인 위험 선택 업무라고 정확히 설명하고, ㄷ은 체신관서가 신체적·환경적·도덕적 위험을 종합하여 인수 여부와 조건을 정한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한다.
③ X —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ㄴ은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도덕적 위험의 판단 요소로 고쳐야 한다. ㄹ의 '계약자를 직접 면담'도 잘못되었으며, 올바르게는 적부조사자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주요 확인사항을 조사한다. 옳은 조합은 ㄱ·ㄷ이다.
④ X —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ㄹ의 '계약자를 직접 면담'이 잘못된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적부조사자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한다. 따라서 옳은 조합은 ㄱ·ㄷ이다.

오답 포인트

ㄴ에서는 위험 요소를 나열한 앞부분만 보고 모두 환경적 위험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도덕적 위험에 해당한다. ㄹ에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와 실제 위험평가 대상인 피보험자를 혼동하기 쉽지만, 계약적부조사의 직접 면담 대상은 피보험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활환경·활동에서 생기는 위험은 환경적 위험, 보험금 취득 동기나 이해관계에서 생기는 위험은 도덕적 위험으로 구분한다. 적부조사의 면담 대상은 위험평가의 대상인 피보험자로 판단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ㄱ·ㄷ만 옳다.

암기 포인트

언더라이팅은 위험 선택, 수익자 관계는 도덕적 위험, 적부조사 면담은 피보험자이다.

NoteBase

13.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 거주자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② 보장성보험을 해지할 경우, 이미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③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을 경우, 그 보험료는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④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귀속 과세기간, 해지의 효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한도와 공제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일정한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르면 보험료 세액공제의 주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제한다.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별도의 연 100만원 한도에서 15%를 공제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 거주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틀린 표현: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 거주자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올바른 표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② X
보장성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세액공제받은 보험료 자체가 기타소득으로 바뀌어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연도 중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 전에 실제 납입한 공제대상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틀린 표현: '이미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올바른 표현: '보험 해지만으로 이미 세액공제받은 보험료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③ O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가 보장하는 기간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미리 납부했다면 연간 공제한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할 수 있다.

④ X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공제율은 12%가 아니라 15%이다.
틀린 표현: '12%'
올바른 표현: '15%'

오답 포인트

③의 실제 납부일 기준을 보험의 보장기간 기준으로 오해하기 쉽다. 또한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공제율 12%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④를 옳다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료 세액공제 문제에서는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을 찾은 뒤,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한도와 공제율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실제 납부연도·일반 12%·장애인전용 15%'로 정리한다.

NoteBase

14. 우체국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배당 청소년꿈보험 2109는 체신관서가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상품이다.

②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2109는 체신관서가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상품이다.

③ 무배당 우체국나르미안전보험 2109는 체신관서가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상품이다.

④ 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 2109는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체신관서가 공익재원으로 보험료 1만 원(1년 만기 기준)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체국 공익보험·제휴보험별 가입 대상과 보험료 부담 방식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청소년꿈보험은 선정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공익보험이다. 우체국예금제휴보험은 일정 우체국 예금상품 가입 고객에게 무료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보험이다. 나르미안전보험은 플랫폼 경제 운송업 종사자의 보험료를 계약자와 체신관서가 절반씩 부담하는 공익형 교통상해보험이다.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가입자가 소액 보험료를 내고 나머지를 공익재원으로 부담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보험료를 50% 지원'이다. 청소년꿈보험 2109는 선정된 지원 대상 청소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무료로 가입시키는 상품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보험료를 80% 지원'이다. 우체국예금제휴보험 2109는 장병내일준비적금·아이LOVE적금 등 정해진 우체국 예금상품 가입 고객에게 무료 보험서비스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③ O
우체국나르미안전보험 2109는 플랫폼 경제 운송업 종사자를 위한 공익형 교통상해보험이며, 보험료의 50%는 개별 보험계약자가 내고 나머지 50%는 체신관서가 공익재원으로 부담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성별·나이에 상관없이'와 '보험료 1만 원을 지원'이다. 만원의행복보험 2109는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1년 만기에서는 가입자가 보험료 1만 원을 내고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재원으로 부담한다.

오답 포인트

①·②의 50%와 80%는 실제 지원 비율처럼 보이지만 각각 무료 가입형과 예금 연계 무료 서비스이다. ④는 '1만 원'의 납입 주체를 뒤바꾼 함정으로, 1만 원은 체신관서의 지원액이 아니라 1년 만기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품별로 '가입 대상-가입 방식-보험료 부담 주체'를 묶어 판단한다. 무료 가입형인 청소년꿈보험, 예금 연계 무료형인 우체국예금제휴보험, 계약자와 체신관서가 50%씩 부담하는 나르미안전보험, 가입자가 1만 원을 내고 나머지를 지원받는 만원의행복보험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청소년꿈은 무료, 예금제휴도 무료 서비스, 나르미는 반반, 만원의행복은 가입자가 1만 원이다.

NoteBase

15. <보기>에서 우체국보험 제도성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 보 기 >

ㄱ.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의 대상계약은 전환대상상품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이다.

ㄴ.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에서 지정대리 청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다.

ㄷ.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의 대상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이다.

ㄹ.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부담보특약 2109의 가입대상은 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자이며, 관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보험 제도성특약별 대상계약, 지정대리청구인의 범위, 가입대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옳은 보기의 개수를 세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은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는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같은 계약에 적용되며,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이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재해부담보특약 2109의 가입대상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NoteBase

보기 판단

ㄱ O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의 대상계약은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이므로 맞다.
ㄴ X — 틀린 표현은 '4촌 이내의 친족'이다. 올바르게는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다.
ㄷ O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2109의 대상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사망 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이므로 맞다.
ㄹ X — 틀린 표현은 '관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자뿐 아니라 관리하는 경우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과 ㄷ의 2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옳은 보기가 1개라는 선택지이지만 실제로는 ㄱ과 ㄷ의 2개이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② O — 옳은 보기는 ㄱ과 ㄷ으로 정확히 2개이므로 맞다.
③ X — 옳은 보기가 3개라는 선택지이지만 ㄴ과 ㄹ이 틀려 실제로는 2개이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④ X — 옳은 보기가 4개라는 선택지이지만 ㄴ과 ㄹ이 틀려 실제로는 2개이다. 올바르게는 '2개'이다.

오답 포인트

ㄴ의 친족 범위를 '4촌'으로 넓혀 기억하거나, ㄹ에서 이륜자동차의 '관리자'를 가입대상에서 빼면 개수를 잘못 세게 된다. 핵심 함정은 '3촌 이내'와 '관리하는 경우 포함'이라는 두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수형 문항은 각 보기를 먼저 독립적으로 O/X 판단한 뒤 O의 수만 센다. 이 문항에서는 대상계약의 당사자 동일 여부, 지정대리청구인의 친족 범위, 이륜자동차의 소유·관리 포함 여부를 차례로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지정대리청구인은 배우자·3촌 이내 친족, 이륜자동차 특약은 운전·소유·관리까지 포함한다.

NoteBase

16. 우체국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2109의 일시납 보험료는 전환전 계약의 만기보험금과 배당금의 합계액이다.

② 무배당 에버리치상해보험 2109는 보험 만기일 1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2109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③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2109는 기본보험료 2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수익률을 증대한 상품이다.

④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저축보험 2109는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보험 상품별로 전환 재원, 전환 가능 계약, 수수료 인하 기준, 중도인출 가능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2109는 전환 전 계약의 만기자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재예치하는 특약이다. 상품명이 비슷하더라도 가입 가능 계약, 수수료 우대 기준, 중도인출 시점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각각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2109의 일시납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에서 지급되는 만기보험금과 배당금의 합계액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무배당 에버리치상해보험 2109'이다. 알찬전환특약의 가입 신청 기간은 전환 전 계약의 만기일 1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이지만, 에버리치상해보험은 전환 가능 계약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에버리치복지보험(일반형), 무배당 에버리치복지보험(일반형), 복지보험, 파워적립보험,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무배당 빅보너스저축보험 및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일반형) 중 유효계약이 전환 대상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기본보험료 20만 원 초과금액'이다. 무배당 파워적립보험 2109는 기본보험료 3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여 수익률을 높인 상품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부터'이다.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저축보험 2109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금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올바른 신청 기간에 전환 대상이 아닌 상해보험을 끼워 넣었고, ③과 ④는 각각 30만 원을 20만 원으로, 1개월을 1년으로 바꾼 수치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환특약은 '재원·대상 계약·신청 기간'을 묶어 확인하고, 저축성 상품은 '수수료 기준금액·중도인출 개시 시점·연간 횟수'를 숫자 단위까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알찬전환은 만기보험금과 배당금, 파워적립은 30만 원 초과분, 온라인저축은 1개월 후 연 12회이다.

NoteBase

17. 우체국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2109는 1가지 건강관련 간편고지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② 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2112에 보험가입금액 2,500만 원을 가입하는 경우,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서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③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 2109의 해약환급금 50%지급형에 가입한 경우,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는다.

④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109 2종(간편가입)에 가입 후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종(일반가입)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약 심사를 통하여 1종(일반가입)에 청약할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 상품별 간편고지, 고액계약 할인, 해약환급금 지급 조건, 일반가입 전환 절차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해약환급금 50%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때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더 저렴한 유형이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해지하면 표준형과 동일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을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무배당 우체국더간편건강보험(갱신형) 2109는 건강 관련 간편고지 사항 1개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② O
무배당 우체국와이드건강보험 2112에 보험가입금액 2,500만원으로 가입하면 고액계약 기준을 충족하므로 주계약 보험료에 고액계약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③ X
50% 지급 조건은 '보험기간 중' 모든 해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에 적용된다.
틀린 표현: 보험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받는다.
올바른 표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받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난 뒤 해지되면 표준형과 동일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다.

④ O
무배당 우체국실속정기보험 2109의 2종(간편가입) 가입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종(일반가입)을 희망하면 일반계약 심사를 거쳐 1종(일반가입)에 청약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함정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더 넓은 개념인 '보험기간'으로 바꾼 데 있다. 50% 지급형이라는 명칭만 보고 계약이 유지되는 전 기간에 항상 50%만 지급된다고 판단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약환급금 관련 선지는 먼저 해지 시점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인지 납입 완료 후인지 확인한다. 납입기간 중에는 표준형의 50%, 납입 완료 후에는 표준형과 동일하다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50% 지급형은 납입 중 50%, 납입 후 표준형과 동일이다.

NoteBase

18. 우체국보험의 효력상실 및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②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납입최고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등으로 이루어진다.

③ 체신관서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계약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해당 월분 보험료의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이며,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에서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절차와 해지계약의 부활 요건을 묻는다. 핵심은 부활 청약 기간, 납입최고 시점, 부활 시 납입액,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효력상실·해지 = 보험료를 유예기간 안에 내지 않아 계약의 보장 효력이 끝나는 것이다.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다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다.
납입최고(독촉) = 연체보험료를 유예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우체국보험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보험료가 그때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유예기간 종료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 이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와 우체국보험 약관에 따른 구분이다.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해지계약은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고, 부활이 승낙되면 청약일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약관상 이자를 납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보험료 연체 해지계약은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O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이면 체신관서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연체보험료 납입과 미납 시 계약 해지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옳다.

③ O
체신관서가 부활을 승낙하면 계약자는 부활 청약일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X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 다음 날로 연장된다는 부분은 맞지만, 유예기간을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올바른 표현: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오답 포인트

④는 '마지막 날이 비영업일이면 그 다음 날'이라는 맞는 문구 뒤에 유예기간을 한 달 짧게 제시한 함정이다. '다음 달'과 '다음 다음 달'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효력상실·부활 문항은 '부활 청약은 해지일부터 3년 이내', '납입최고는 유예기간 종료 15일 이전까지', '부활 시 연체보험료와 약관상 이자 납입', '유예기간은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의 네 기준으로 선지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우체국보험은 '부활 3년, 최고 15일, 유예는 다다음 달 말일'로 기억한다.

NoteBase

19. 우체국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② 체신관서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는 보험금 지급예정일 30일 초과사유에 해당된다.

④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는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사망보험금액의 60%를 선지급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기한과 그 예외, 선지급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기간의 숫자뿐 아니라 영업일 여부와 지급받는 주체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선지급사망보험금 =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핵심 구분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우체국보험 약관상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사유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야 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조사 때문에 그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우면 지급예정일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하지만, 소송제기·분쟁조정신청·수사기관의 조사·해외 보험사고 조사는 그 30영업일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선지급사망보험금은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액의 60%를 지급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틀린 표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올바른 표현: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X
체신관서가 모든 보험금을 접수일부터 일률적으로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은 3영업일 이내이고,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이다.
틀린 표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되, 조사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O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는 지급예정일을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한다는 원칙의 예외 사유이다. 따라서 이 선지가 옳다.

④ X
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사망보험금액의 60%를 선지급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지급 대상은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이다.
틀린 표현: 선지급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올바른 표현: 선지급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조사·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의 10영업일을 모든 청구에 적용되는 일반 기한처럼 바꾸었고, ④는 6개월과 60%라는 숫자는 그대로 둔 채 지급 대상을 피보험자에서 보험수익자로 바꾸었다. ③은 열거된 사유들이 30영업일 이내 원칙의 예외라는 점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험금 지급 규정은 소멸시효, 일반 지급기한, 조사 시 지급기한, 장기 조사 예외, 지급 대상의 순서로 나누어 판단한다. 숫자가 맞아 보여도 '영업일'인지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 중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청구권 3년, 지급 3영업일·조사 10영업일, 30영업일 예외는 소송·분쟁조정·수사·해외조사,
선지급사망보험금은 6개월·60%·피보험자이다.

NoteBase

20. 우체국보험 재무건전성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체국보험은 자본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지급여력비율을 반기별로 산출·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본부장은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보유자산에 대해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며 "고정",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체국보험의 자본 적정성, 검사 요청, 경영개선계획 및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주기와 경영개선계획 기준 비율, 검사 요청의 주체, 조기 상각 대상 자산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지급여력비율은 우체국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감당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무건전성 지표이다. 자산건전성 분류는 보유자산의 회수 가능성과 부실 정도를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나누는 것이다.

핵심 구분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조는 지급여력비율을 분기별로 산출·관리하도록 하고, 제10조는 그 비율이 100% 미만이면서 보험금 미지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같은 기준 제8조는 자산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되, 조기 상각 대상은 고정 자산까지가 아니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자산으로 한정한다. 한편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급여력비율은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산출·관리해야 한다.
틀린 표현: '반기별로 산출·관리'
올바른 표현: '분기별로 산출·관리'

②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보험사업의 건전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한 검사 요청의 주체와 상대방을 정확히 서술한 선지이다.

③ X
경영개선계획의 지급여력비율 기준은 150% 미만이 아니라 100% 미만이다. 여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틀린 표현: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
올바른 표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X
자산건전성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조기 상각 대상에 고정 자산을 포함한 부분이 틀렸다. 조기 상각 대상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자산이다.
틀린 표현: '고정,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
올바른 표현: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

오답 포인트

①의 '반기별'과 ③의 '150%'는 숫자·주기를 바꾼 함정이고, ④는 5단계 분류 자체는 맞게 제시한 뒤 조기 상각 대상에 '고정'을 끼워 넣은 함정이다. 특히 ④에서는 분류 단계와 조기 상각 대상을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체국보험 재무건전성 문항에서는 먼저 '분기별 산출·관리, 100% 미만과 보험금 미지급 우려, 회수의문·추정손실 조기 상각'을 확인한다. 검사 관련 선지는 요청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 요청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지급여력은 분기별·100%, 조기 상각은 회수의문·추정손실, 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위원회에 요청한다.

NoteBase